

(공시보고서 표지 - 공통)

주요 경영상황 공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0 년 10 월 30 일

금융투자협회 귀중

회 사 명 :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영문명) Woori Asset Trust
(홈페이지) <http://www.wooriat.com>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
(전 화) (02) 6202-3000

대 표 이 사 : 이 창 하 이 창 재
담 당 임 원 : (직 책) 경영기획본부장 (성 명) 조 광 희 (전 화) (02) 6202-5115

작 성 자 : (직 책) 준법지원팀장 (성 명) 안 광 수 (전 화) (02) 6202-5119

제 출 이 유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따른 주요 경영상황

※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59조에 따른 『법정공시사항』으로 그 내용에 허위,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6-2호)

소송 등의 판결·결정

1. 사건의 명칭	부당이득금
2. 원고·신청인	학교법인 충청학원
3. 판결·결정내용	당사 일부 패소(제1심)
4. 판결·결정사유	토지 소유자인 원고는 건물 소유자였던 당사를 상대로 토지 점유사용 기간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전부금 포함)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전부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전부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가 이전되어 이를 상실한 원고가 전부채권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 각하하였으며, 전부금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 당사의 선의의 점유 기간을 제외하고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함
5.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6. 판결·결정일자	2020.10.28
7. 확인일자	2020.10.2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신탁재산(건물) 매각대금과 당사의 고유재산으로 판결금을 지급하고, 항소 여부 및 고유재산 지급액에 대한 비용 회수절차 진행 여부를 각 검토 중임

<기재상의 주의>

- 주1) 당해 법인의 경영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가처분 포함) 등의 판결·결정이 확인된 때 공시한다.
- 주2) “판결·결정사유”는 소송의 포기·취하·인낙·화해, 판결, 결정, 명령, 신청 철회 등 사건이 종료된 원인을 기재한다.
- 주3) 상기사항 외의 소송 등의 판결·결정과 관련하여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